

• 전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

# 도서관법개정과 그 이후의 제문제

정 필 모

(중앙대 도서관학과 교수)

10월 30일은 한국도서관계의 중요한 기념일이 될만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날 1987년 10월 30일에 우리 도서관인들이 10여년동안 그렇게도 갈망하던 도서관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법의 개정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서관인들이 누구나가 만족할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이 법개정에 직접 참여했던 법제처의 관계자 한분이 자기는 “이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법은 이제 처음 다루어 보았다”는 소감을 털어 놓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이 만족할만 하다고 보는 이유는 종래의 구법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도서관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 및 재원확보를 위하여 도서관발전위원회와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며,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육성을 의무화하고,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하였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제9조(도서관발전위원회)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0조(도서관진흥기금) ①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시설·운영 기타 도서관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3. 기금의 운영에서 생기는 수익금

제12조(조세감면) ①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에 기부한 금전 기탁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육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자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5조(설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에 중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법을 개정하여 이와같이 훌륭한 도서관법을 만들게 된 것은 이에 직접적 관여했던 도서관인을 비롯해서 기타 여러분들의 성심과 노력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도서관법개정을 위해서 몇년동안 밤낮없이 동분서주했던 도서관협회의 박大權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이에 직접 관계했던 도서관전문인들 그리고 이 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 앞장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金賢子의원과 문교부의 공무원 및 국회 문공위 및 법사위의 관계 전문위원 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도서관법의 제정부터 개정까지의 연혁을 살펴보면:

- 1955. 4. 16 한국도서관협회의 창립총회에서 도서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의 제정을 추진키로 결의
- 1956. 1. 7. 도서관법 제1차 초안을 작성하였으나 추진도중에 유산
- 1957. 5. 8. 한국도서관협회에 도서관법제정위원회 구성
- 1957. 11. 15 도서관법 제2차 초안을 작성(6장 35조)
- 1958. 7. 6 제2차 초안의 내용을 일부수정(4장30조)
- 1958. 7. 15 도서관법제정위원회를 행정분과위원회로 개편하여 도서관법의 제정추진과 이와 관련된 행정적인 문제를 검토
- 1958. 11. 20 도서관법의 제정을 국회에 건의(민장식 의원이 제안) 하였으나 폐기
- 1959. 5. 7 도서관법 제3차 초안을 작성(4장 35조)
- 1961. 6. 10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도서관법제정을 건의
- 1962. 7. 9 차관회의에 상정하였으나 다시 폐기
- 1963. 4. 17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재상정
- 1963. 10. 5 국가재건최고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서관법을 통과

1963. 10. 28 도서관법 법률 제1424호로 공포.
1965. 3. 26 도서관법시행령을 대통령령 제2086호로 제정
1966. 3. 23 도서관법시행규칙을 문교부령 제172호로 제정
1967. 3. 27 도서관법시행령을 대통령령 제2964호로 제1차 제정
1969. 7. 19 도서관시행규칙을 문교부령 제236호로 제1차 개정
1969. 11. 3 도서관법시행령을 대통령령 제4191호로 제2차 개정
1975. 11. 5 도서관법시행규칙을 문교부령 제369호로 제2차 개정
1976. 10. 5 도서관법 1차 개정안 작성
1977. 6. 2 도서관법시행령을 대통령령 제8583호로 제3차 개정
1979. 10. 2 도서관법2차 개정안 작성(9장 54조)
1979. 11. 16 도서관법개정안 문교부에 개정 건의
1981. 2. 21 도서관법2차 개정안에 대한 지상공청회
1981. 3. 30 도서관법3차 개정안작성(7장 38조)
1981. 6. 10 도서관법개정안 문교부에 개정 건의
1981. 7. 3 문교부에서 3개기관(도협, 국립중앙도서관, 서울대)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한 축조 심의
1981. 7. 11 문교부 개정안에 대한 조정안 작성
1981. 8. 10 도서관법 4차 개정안 작성(8장 40조)
1981. 8. 20 관계부처(경제기획원등)에 도서관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 공문 발송(문교부)
1981. 9. 5 관계부처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회의적인 의견 접수
1986. 1. 28 문교부장관 도서관법개정 의사 천명
1986. 4. 8 문교부 200여기관으로부터 도서관법개정자료수집
1986. 5. 20 문교부 한국교육개발원에 “도서관 운영체제방안 연구”(도서관법개정안포함) 위촉
1986. 11. 5 민주정의당 국책연구소 교육·문화분과위원회에서 7차에 걸친 도서관발전 방안에 관한 회의 개최
1987. 1. 15 도서관법 5차개정안 작성(8장 53조)
1987. 3. 14 김현자의원 “도서관 발전방안”을 민정당 노태우대표 위원에 보고(민정당정 책사업으로 확정)
1987. 4. 5 문교부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위촉(13명)  
(이용남, 최달현, 한상완, 권기원, 류형승, 류동열, 박종근, 박대권, 조원호, 한경희, 이정희, 최운실, 김연수)
1987. 4. 10 제1차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개정안 심의 분장  
총 칙 최운실 박대권  
국립도서관, 협력망 조원호 한상완

공공도서관	이용남	최달현
대학도서관	류동열	박종근 유형승
학교도서관	이정희	한경희
교 육	권기원	한상완 최운실

- 1987. 4. 16 제2차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분장심의작업을 토대로 합동회의 개최하여 축조심의
- 1987. 4. 18 제3차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1987. 4. 20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안에 대한 문교부 실무작업
- 1987. 4. 24 제4차 도서관법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개정안 확정
- 1987. 5. 1 문교부 개정심의위원회 개정안 부내 국, 실에 협의의뢰
- 1987. 6. 2 도서관법개정 문교부(안) 확정
- 1987. 7. 30 한국교육개발원 “도서관체제확립 및 운영활성화 방안연구” 출간  
- 도서관법개정 주요내용 제시
- 1987. 8. 4 문교부 도서관법개정안 민정당에 제출
- 1987. 8. 26 도서관법개정에 관한 당정협의회개최(민정당 문공위)
- 1987. 8. 28 민정당 도서관법개정안 법제처에 축조심의 의뢰
- 1987. 9. 5 도서관법개정에 관한 당정협의회 개최(민정당법사위)
- 1987. 9. 6 민정당법사위의 의견 제시에 대한 법제처 조문 재검토
- 1987. 9. 12 국회도서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 1987. 9. 16 도서관법개정안에 대한 간담회  
(김현자의원, 조일문의원, 주순호국립중앙도서관장, 김주봉국회도서관장)
- 1987. 9. 19 개정안검토를 위한 민정당 법사위 개최  
- 개정안 문교부(안) 확정
- 1987. 9. 21 민정당 중집위 개최  
- 도서관법개정안 민정당(안) 확정
- 1987. 9. 30 민정당 도서관법개정안 국회에 이송
- 1987. 10. 5 국회문공위에 도서관법개정법률안 김현자의원의 38인이 제안
- 1987. 10. 10 도서관법개정법률안 회부
- 1987. 10. 28 제137회 정기국회 제9차 문공위에 상정 가결
- 1987. 10. 29 제137회 정기국회 법사위에 상정 가결
- 1987. 10. 30 제137회 정기국회 제11차 본회의 도서관법개정법률안 상정 가결 통과

그러나 도서관법은 우리들이 소망하던대로 국회본회의까지 통과했으나 앞으로 그에 못지 않은 오히려 더 중요한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서관법시행령과 도서관법시행규칙입니다.

법률이란 본래 국회의 관계 상임위원회 및 법사위의 심의가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통과되면, 이 법률은 정부로 이송되어서 대통령이 이를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을 시행하자면 이제 3개월 이내에 문교부와 법제처가 협의해서 도서관법시행령을 제정해서 각의(국무회의)에서 통과하면 대통령령으로 공포해야 하며, 동시 주무부처인 문교부는 이 시행령에 따라 법을 집행하기 위한 도서관법시행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엔 개정된 도서관법은 법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거의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더욱 중요한 것이며, 우리 도서관인들이 이에 참여해서 모처럼 잘 만들어진 훌륭한 도서관법이 또한 훌륭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도서관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제정되지 못한다면 이미 통과된 도서관법자체가 많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도서관법에서 이미 잘 제정해 놓고도 전혀 시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25조(설치) ①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도서실 또는 도서관을 실업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는 도서관을 두어야 한다.

② 학교도서관의 시설기준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제26조(직원) 학교도서관의 직무를 담당할 직원으로서 실업고등전문학교, 초급대학, 대학(교), 교육대학, 사범대학에는 사서직원을 두어야 하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각각 사서교사 또는 사서의 직무를 담당할 교사를 두어야 한다.

만약 위의 법조문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잘 제정되었다면 우리나라의 학교도서관은 현재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러한 부분은 정부에 대해서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시행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도서관법시행령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제6조(도서관의 시설·자료) ①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타에도 많은 예가 있지만 나머지는 다음의 주제발표자들이 관종별로 관계된 사항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믿고 이만 줄입니다.

끝으로 우리는 한국의 도서관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이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도서관법과 관련된 제법규를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법개정후의 개정하여야 할 관련법규

1. 공무원 임용령(3조1항 별표)
  - 사서직공무원의 상한직급이 사서관(4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2급까지 상향 조정
2. 지방공무원 임용령(3조1항 별표)
  - 지방사서직공무원의 상한직급이 사서관(5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3급까지 상향 조정
3. 교육법 시행령(79조1항 별표)
  - 교사자격기준에 교사는 1급정교사와 2급 정교사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사서교사도 1, 2급으로 구분해야 함.
4.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대통령령 11847호
  - 2급 정교사의 기산호봉인 17호봉에서 출발하게 되어 있는 사서교사의 기산호봉을 1급 정교사와 동등하게 하여 줄 것.
5. 주임교사임용규정(4조) 문교부령 209호
  - 사서교사도 일반교사와 같이 주임교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아울러 교감 및 교장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진로 개척
6. 교육공무원승진규정(34조6호) 대통령령 11891호
  - 현행규정은 사서교사는 주임교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무평점가산점을 받을 수 없음.
7. 학교시설설비기준령(별표 3) 대통령령 10878호
  - 시설설비기준령에 좌석수와 도서수만 있으므로 사서교사와 실기교사(사서)의 배정기준, 자료의 구성비율 및 정리의 기준, 시설 및 설비기준, 경비, 예산기준, 도서관이용도와 독서지도 등 보완.
8. 대학설치기준령(12조 4호) 대통령령 11153호(83. 6. 25)
  - 대학의 학술잡지종수는 학과당 일률적으로 10~15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문계열 30종이상, 사회 및 자연계열 50종이상, 가정 및 예체능계열 20종이상 의 · 치과 200종 이상으로 개정.
9. 국립학교설치령(13조1항) 대통령령 11654호(85. 2. 28)

- 도서관의 수서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사서관(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리과장 및 열람과장은 5급 또는 4급 사서관으로 선택적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함.
- 10. 공무원수당규정(별표 11) 대통령령 11848호(86. 1. 25)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 10723호)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은 수당을 받고 있으며, 또한 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 10711호)에 의하여 사서직공무원 수당은 국립중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에 한하여 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인 바 여타 국가기관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도 수당을 받도록 규정 개정.
- 11. 국고 및 기성회예산 편성지침
  - 대학에 도서구입항목을 독립신설, 대학경상비(시설비, 병원경비제외)의 5%이상으로 책정
- 12. 조세감면규제법(49조)
  - 각종도서관의 설립기금 또는 운영자금을 기부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토록 개정
- 13. 관세법
  -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각종기계류의 수입에 관세인하
- 14. 물품관리법
  - 도서의 폐기·제적

● 未納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協會는 財政自立이 마련되지 못한 채 다만 여러 會員들이 負擔하는 會費와 出版物 代金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어려움을 깊이 理解하시어 未納된 團體會費와 個人會費 그리고 出版物代金を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